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075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 신설 (조승래의원안)	3

I. 개요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075호)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2) 발 의 일 : 2026. 2. 26.
- (3) 회 부 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다공제를 유도하여 이로 인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민간 영역인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되고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

고자 함(안 제81조의20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 신설 (조승래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 마련(안 제81조의 20 신설) ○ 체납자료의 제공 요구권자 추가 - (주체) 국세청장 - (대상)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및 세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세무처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 - (행정지도 내용) 세무처리 지원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조승래의원안 2026. 2. 26. 발의(의안번호 17075)

☐ 개정안은 민간 세무플랫폼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오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다공제 유도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국세청장이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이하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세무플랫폼은 납세자가 직접 세법을 해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정리·계산하여 신고 또는 환급 절차를 보조하는 민간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되는 소득·원천징수·공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환급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세무플랫폼 업체는 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나 경험이 부족한 1인·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고 접근성을 높여 주고, ② 환급 가능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환급을 용이하게 하며, ③ 비대면·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음.

반면, 세무플랫폼 운영 과정상 오류 등으로 인한 신고 지연 문제, 세무플랫폼의 자료취득 과정에서 국세행정 포털시스템의 과부하 발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제¹⁾, 허위·과장 광고 등 광고·안내의 적정성 문제²⁾ 등이 제기되고 있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6월 28일, 세무플랫폼 삼쩍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비즈엔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 삼쩍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②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한 사실, ③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④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음.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세무플랫폼 삼쩍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비즈엔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및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① “새 환급금이 도착했어요”등과 같이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하였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되어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②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쩍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개정안은 세무플랫폼이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법상 민간 세무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민간 세무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현행 납세자 구제제도는 주로 경정·불복·고충 민원 처리 등의 사후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전산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논리체계를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시적·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무플랫폼의 특성상 서비스에 오류가 존재할 경우 대규모의 납세자에게 동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³⁾ 세무플랫폼 시장의 확대는 국세 전산시스템의 과부하 발생·세무서 민원 급증·경정청구 및 불복건수 급증 등 세정업무 부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어,⁴⁾ 사후적 조치만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으며, ③“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하여 평균 536,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희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④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통계는 삼짍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등의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하였음.

3) 2025년 6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에 AI 기반 세무신고 플랫폼인 ‘썸157’에서 자료 수집·신고 처리 과정상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등 약 2만 9천명의 이용자가 법정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용자들에게 기한후신고 전환, 가산세 부담, 세액감면 배제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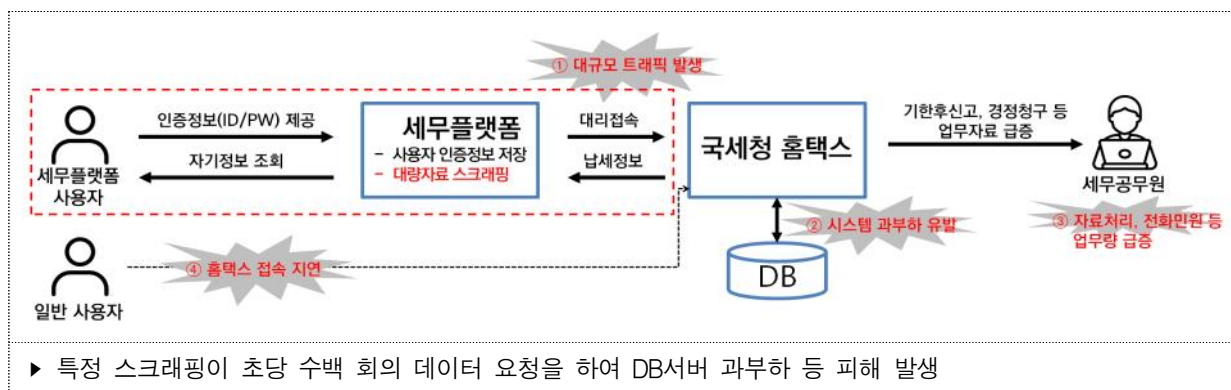
4)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플랫폼 등의 대규모 스크래핑으로 홈택스 트래픽이 증가하여 접속 지연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또한 세무플랫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삼짍삼, 토스인컴, 비즈넷환급, 썸(SSEM) 등 다양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스크래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플랫폼 업체의 과장 광고, 서비스 경쟁 등으로 인해 경정청구, 기한 후 환급신고 등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임. 국세청,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제안요청서, 2025.5.

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장의 세무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의 책임 행정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음. 현행법상 국세청이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관리·감독·지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세청이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방지, 신고지원 절차의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강제적·공권적 사전규제 대신 행정지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스크래핑 개념도]



자료: 국세청,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제안요청서, 2025.5.

해당 업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대응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적용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서비스 유형이 다양한 민간 세무플랫폼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곧바로 인허가·등록·제재 등 규제체계를 도입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최소한의 공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음.

□ 정부는 ① 전산장애의 원인은 신고기한일 직전에 이루어진 납세자들의 신고 집중이 원인이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고, ② 「국세기본법」은 국세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루는 법이므로, 특정 서비스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임.

□ 그런데 ① 전산 장애는 내부 시스템의 성능 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의 접속 방식, 자동화를 통한 자료 수집 규모의 급증, 사용자 유인에 따른 특정 시점의 정보량 집중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기술적 개선과 외부 서비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는 상호 대체관계가 아니라 병행 가능한 대응수단으로 볼 수 있고, ② 세무플랫폼이 대량 접속이나 스크래핑 등을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상, 세무플랫폼에 대해 접속량 분산 조치 제안, 안정적인 연계 방식 활용 권고, 신고기한 전 이용자 안내 등에 관한 협조 등을 요청할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또한, 「국세기본법」이 국세 행정의 기본 원칙과 공통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세무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를 두는 것이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세무플랫폼은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환급신청 등 국세 행정 과정에 사실상 관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는 별개의 업역 규제라기보다 납세자 보호와 성실신고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조치로 볼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인허가·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감독수단이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그 규율 수단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⁵⁾

□ 한편, 세무플랫폼의 서비스 영역 및 범위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세무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정부가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묵인하거나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납세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으로 보이며,⁶⁾ 개정안에 따른 행정지도는 해당 법률에 저촉되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면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특정 서비스 주체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면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필요한 지시 근거를 두고 있는바,

6) 2025.12.2. 국회는 ①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함.(「세무사법」 제20조제3항)

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는 세무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납세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149